

15c - 125

나 :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이 개시되지만, 특히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점령지 각지에 군위안소가 설치되어 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인한 전선의 확대는 동시에 군위안소라는 비극의 증가를 의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군위안부로 강제연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제연행이라 함은 두 가지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군위안부가 되었든, 위안부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경우가 진무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위안소로 보내져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기까지 식민지 권력, 군을 비롯한 일본국가의 강제력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군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조선인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행되었으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 갈 수 없는 노예적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강제연행의 본질입니다.

강제연행을 매우 협소하게 물리적 폭력의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무엇보다도 당사가 전시상황으로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적 자원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극히 기초적인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는, 허위에 가득 찬 기만적 연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제연행에 관해 피해자 몇 분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디오 자료

나 : 이상과 같이 군위안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언이 확보된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과연 어떻게 강제연행 되었는가를 통계를 빌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행 시기를 보면, 대부분 중일전쟁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행시의 나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대의 소녀이며, 심지어 그 중에는 11세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위안부 피해자의 출신지역을 보면 비교적 조선의 남부 지방이 많습디만,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위안부의 고난은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연행의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저희들은 강제동원의 방법을 편의상 사기, 납치, 인신매매의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대부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여, 끌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치에는 보다 직접적인 폭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일종의 채무노예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증언을 정리해 본 결과, 강제연행의 방법으로는 사기와 납치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기와 납치는 사진적 내지 법률적 차원에서는 그 의미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군위안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2년 경에 연행된 김은례 할머니의 증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를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고 통고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3년만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미친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옥실이(김은례)를 어디 내

보내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게 하라" 고 하고 갔다고 하대. 만일에 "도망가고 없으면 우리 식구 모두를 총살시킬 줄 알라"면서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 어떡 해?"... 나도 이국 땅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데

이 김은례 할머니의 사례는 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민통치와 전시체제라는 이중의 가혹한 지배에 시달리던 조선의 평범한 민간인들에게, 경찰관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로 복종해야 할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에서 거의 반수를 점하는 사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권 통치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제도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기 증언을 하러 나오신 박영심 할머니는, 1938년 3월 당시 16살의 나이에 평양에서, 공장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한 일본 경찰관에 의해, 난징의 위안소로 보내졌습니다. 또 하상숙 할머니는 1944년에 두 명의 조선인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일본군을 위해 위문단에서 일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 병원의 간호사 일을 하러 간다는 명목도 사기의 방법 중 하나로 종종 등장합니다.

납치의 경우는 식민지 말단 권력인 경찰 혹은 군인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심달연은 연행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그 때 나는 열 두 살인가 열 세 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강제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언니하고 둘이서 나물을 캐러 나갔습니다. 한참 나물을 뜯고 있는데, 어떤 차가 다가오더니, 모자를 쓰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두어 명 내렸습니다. 우리 쪽에 와서는 광주리를 발로 차버리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자매는 무서워 그냥 끌이안고만 있었습니다. 그 때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언니의 머리채를 쥐어서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내가 "언니야" 하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 쫓아와서 나도 차에 태워 버렸습니다.

심달연 할머니가 차에 타고 보니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전부 차에 실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우니까, 구둣발로 그냥 차버렸습니다. 구둣발에 한 번 차이면 정말 아팠습니다. 이렇게 심달연의 연행 과정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군위안부로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연행자나 일본 군인은 여성을 고문하거나 강간, 집단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김덕진 할머니는 17살 되던 해에 취직시켜 준다는 꾀임에 속아 일본 나가사키에 갔습니다. 나가사키의 여관에서 첫 날의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개급이 높은 군인에게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 그 군인은 충을 차고 있었다. 피고 나오고 무서워시 내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 그 군인은 내 등을 두드리 주면서 아무 때 당해도 당하니까 그런 줄 알라미 달랬다. 몇 번만 참으면 곧 괜찮아진다고 말했다. 우리 여자들은 매일 밤 개급이 높은 군인들의 방으로 이곳 저곳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

김덕진 할머니는 상해로 보내졌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한 방법은 명백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조선에까지 적용되던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군위안부의 연행 과정은 '노예 사냥'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이 과연 군부, 경찰, 행정 당국의 관여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고통의 나날을 겪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하는 일에 경찰, 헌병, 관리와 같은 식민지배 말단기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지만, 그것으로 강제연행의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식민지 통치기관과 일본국의 관련부서가 총체적으로 기획, 집행하였기 때문에 군위안소의 강제연행은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941년 일본군이 대 소련 침공의 일환으로 벌인 관동군 특종(特種) 연습에서 확인됩니다. 80만 명의 병력 동원을 계획한 관동군 사령부는 '위안'을 제공할 2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해 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동군 참모였던 하라 겐시로가 조선에 건너가서 조선총독부에 위안부의 조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8천명의 조선 여성을 북중국에 보냈습니다.

대규모로 발주된 군위안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전역과 민중들에게 절대자로 군림하던 조선총독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결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경무국이 실질적인 지휘자였으며, 지역에서는 경찰서를 포함한 일반 행정라인이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시스템을 증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행된 군위안부의 눈에 비친 경찰, 헌병, 면 시기 등은 분명히 국가의 공적 업무의 집행자였습니다. 이 점은 연행된 조선 여성의 강제 이송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제 이송은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되었습니다. 1937년 8월 31일의 외무차관의 통첩을 계기로, '위안부'를 포함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이 도항자의 신분, 직업, 도항목적, 요건, 기한 등을 조사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출발항 관할 경찰서장은 신분증명서 또는 정식여권 소지자에 한해 승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가 발행한 여권이나 증명서, 즉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같은 해 9월 3일과 17일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에서 각 도지사에게 위의 내용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것은 광둥 및 한구 방면으로의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입증됩니다. 1938년 12월에서 3월에 걸쳐 각 도의 경찰부장에게 내려진 3건의 통첩이 그것입니다. 특히 3월 10일자 통첩은 한구 쪽의 "군위안소가 포화상태"이므로 도항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월 20일 최무성 조선부장이 조선총독부 외무부장에게 보낸 문서를 받아, 3월 3일 조선총독부 외무부장이 경무국장에게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각도 경찰부장에게 하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식민지 당국자는 중국 현지의 영사관→외무성 본성→최무성 조선부→조선총독부 외무부(경무국)→각 경찰관서의 경로를 통해 '위안부' 도항을 통제·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은 식민 당국을 포함한 일본 행정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에는 조선군 사령부와 그 예하의 헌병대가 또 다른 루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마에서 연합군의 포로가 된 한 위안소 업자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1942년 조선군 사령부의 제안을 받아 위안부 조달을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업자는 22명의 조선 여성을 300원에서 1000원의 진도금으로 매수했고, 여성들의 나이는 모집 당시 17세에서 29세였습니다. 조선군 사령부는 그에게 모든 일본군 부대가 수송, 식량 지

급, 의료 등의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한을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본군, 조선총독부, 일본국의 관련 부서는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에 간밀하게 관여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히로히토는 군 통수권자인 천황으로서, 도조 히데키는 육군대신 및 수상으로서, 미나미 지로는 조선총독으로서,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조선군 사령관으로서, 오카무라 야스치는 제11군 사령관 및 지나파견군 총사령관으로서, 우메즈 요시지로는 관동군 사령관으로서, 안도 리키치는 제21군 사령관 및 대만군 사령관으로서, 마쓰야마 유조는 제56사단장으로서, 각각 조선의 여성들이 군위안부로 끌려간다는 사안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조선인 위안부 동원과 관련하여 자행된 범죄에 대한 묵인과 그 범죄의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내에서 지위와 직책으로 볼 때, 조선 여성을 아시아와 태평양 각지의 위안소로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제

## 우메즈 기소의 근거박약의 이유?

증거설명을 어떻게  
경계 검문 가해증언  
위안소에 대한 일반적 상황  
정대협 분포도 cd 확인 가져오기?  
한글 기소장 본문.  
피해자 증언 정리 상대 영역/

12.2오전.

김복동 김군자 할머니 비디오 넣을 부분 확정해야.  
문필기 할머니 자료 보완/ 파워포인트 작업부분 확정요

## 강정숙안 2000.12.1

연합군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이 주둔한 곳이면 어디든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도 그것은 확인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영향권은 북쪽으로는 알류산 열도까지, 동쪽으로는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까지 남쪽으로는 뉴기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제도까지, 서쪽으로는 인도양의 안다만과 니코바르제도, 비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연행되어 배치된 곳은 바로 일본군의 영향권과 거의 일치합니다.

(분포도를 가르키며)

이 분포도는 기록과 증언을 통해 위안소가 있었다고 확인된 곳입니다. 이 전부가 조선인에게만 해당하는 분포도는 아닙니다만, 위안소로 표시된 곳의 90% 이상이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 이후 점령한 곳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점령한 곳인 조선(한국), 대만, 중국 동북부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오키나와입니다. 현재 생존한 분을 찾지 못하여 별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진작시킨 배봉기 할머니가 계셨던 곳입니다.

(배봉기 할머니 사진과 오키나와 위안소 분포도)

이곳은 비이마 필리핀과 더불어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단도 발견된 곳입니다.

(필리핀 및 비이마 자료 및 사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조선인 피해자가 있는 것은 한국을 일본군 위안부의 안징적인 공급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오키나와, 중국 최진선, 비이마, 인도 안다만제도 라바울 등지의 진선최진방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존이 위협 받는 장소에 서까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안소 내에서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피해 할머니를 향해)

생존자가 여러분 있고 여기에도 많은 할머니가 오셨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분의 이야기

주제  
나미

고향사람의 회상  
-참/인상

만 듣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피해자 증인과 몸이 아파 여기까지 오리지 못한 피해자들의 증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성함과 끌려간 나이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목하여 \*\*\*할머니 인제 끌려가셨지요?

몇 년생이시지요? 한국나이지요?—검사가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할머니가 직접 말하는 것이 좋을지

어디로 가셨지요?

크곳에 도착해서 겪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일을 당할 때나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순순히 응하셨습니까?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다?

위안소에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할머니 그곳에서는 할머니가 그만두고 나오거나 외출이 자유로웠습니까?

위안소에서의 강간으로 몸에 이상은 없었습니까?

임신이나 성병에 관해/이후 애를 낳으려고 했을 때 낳을 수 있었는지

송신도 할머니

어디로 이동해 다녔습니까?

할머니는 \*\*로 또 이동하였다고 압니다만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할머니 일본군이나 위안소에서 조선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박을 받거나 벌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고고신민나리로 시작되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라든지 일본말말을 하지 못한다고 혹은 조선말을 쓴다고 구박받은 일은 없습니까?

-(하군자할머니에게) 당시 군위안소에 온 일본군이 어느 사단인줄 압니까?

-문필기할머니 끌려가서 다른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각 할머니의 특징을 딴 증인을 들은 이후 정리

박영심은 1938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동안 난징의 '간시로(급수로)' 위안소에 있었다. 군대 병영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위안소는 돌레가 쉼조망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그녀의 일본이름은 '우디마루'였다. 박영심이 있었던 이 지역은 그 당시 하타 순토쿠의 지휘아래 있던 중지나 파진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다시 두 명의 일본군의 감시 아래 상해를 기치 비마의 라시오에 있는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당시 라시오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비마방면군 56사단 사령부였고, 사령관은 마즈야마 유조였다. '이카쿠로' 위안소는 마을과 동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와카하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렸다.

2년후에 그녀는 다시 56사단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비마의 라멩(혹은 마츠야마)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와 다른 '위안부'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한 가운데까지 군인들을 위해 주먹밥을 날라야만 했다.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위안부'들 중에서 8명은 공중포격으로 죽었고 4명만이 살아 남았다. 일본수비대가 패배했을 때, 그녀와 다른 세 명의 조선인 '위안부'는 중국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김군자가 1942년에 후이친의 위안소에 도착한지 이틀에서 사흘이 지난 후에, 일본군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을 당하였다. 이 위안소는 김군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온 조선남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저항을 했다가 귀를 세차게 얻어 맞았다. 오른쪽 귓볼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채 내비려 두어, 그녀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 곳에서 그녀는 '기모코' 혹은 '9번 방'이라고 불렸으며, 일본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일본 군인은 심지어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왔다. 일본군인들은 사무실 거처서 앞마당에 방방이 줄을 섰다고 한다. 전체 한 100명 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많이 오는 날이면, 약 40명 가량의 군인들을 받아야 했으며, 그 때는 씻을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위안소의 경영자는 여자들을 종종 매리고 다른 남자와 있을 때도 감시를 하였다. 그녀는 끔찍한 전쟁터를 코 앞에 두고, 감히 도망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김복동

1922년에 태어난 송신도는 1938년 말경 중국 우창(武昌)의 '세계관(세계 클럽)'이라 불리는 위안소에 사기로 연행되어갔다. 그녀는 의료 검사를 마친 후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하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계속 울면서 그 방에서 도망가려고 했다. 이후에 위안소 경영자는 그녀를 구타하고, 굶겼으며, 작은 방에 감금하였다. 송신도 역시 일본 군인이 칼로 치거나, 찌르거나 하는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그 곳에서 화장실 소독에 쓰이는 크레졸을 병째 들이마시거나, 목 매달아 자살하는 '위안부'를 보았다고 한다.

1944년 하상숙은 40여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한구의 적징리 위안소에 도착했다. 그 위안소는 평양에서 온 부부가 경영하고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한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들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군의관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검사를 하였다. 그 때, 군의관은 하상숙이 처녀인 것을 알았으나, 피임약을 주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영국 조계의 인도인이 지은 장항관으로 갔다. Yamada Seigichi에 따르면, non-commissioned officer가 사진과 영업허가증, 부모로부터의 동의 서신, 신청인의 지방관리에 의해 발행된 보증서를 조사한 후에, 헌병대가 보내온 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처음에 그녀는 세 명의 일본군을 상대하였다. 나중에는 보통 하루에 10명에 15명에 이르는 군인을 상대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정도를 받았다.

난장으로 처음 끌려간 박영심은 하루에 평균 30명에서 40명의 군인을 받아야 했다. 하루는 너무 아파서, 장교를 기절했는데, 그 장교가 주먹으로 매리고 발로 찼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칼을 빼더니 그녀의 목을 찌르면서, 제국군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녀가 피를 삼키고 있는 동안 장교는 강제로 그녀를 강간했다.

김영숙(1927-)도 1939년 12살의 나이에 중국 센양으로 끌려갔다. 그녀를 끌고 간 사람은 '나카무라'라는 장교인데, 끌려간 첫날, 밤에 나카무라가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어려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나카무라는 그녀의 질을 넓힌다고 칼로 찢어 버렸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악화되었지만, 어떠한 의료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계속 군인들을 강제로 받아야 했다.

송신도는 우창에서 임신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임신한 '위안부'도 다수 있었다. 임신한 경우에도 군인을 받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송신도가 그곳에서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도 강제로 군인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임신 7개월째 겹붙은 아이를 유산했다고 한다. 그 위안소에 오는 군인들은 제 11군 6사단과 9사단의 소속이었고, 오카무라 야스지가 사령관이었습니다.

-증인의 이야기를 들은대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왜 끌려가는 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행된 소녀들에게 위안소에서 처음으로 자행되는 일이 강간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성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강간은, 위안소의 엄격한 통제아래 하루에서 수십번씩 몇 달, 몇 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였습지만 먼 이국땅에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체념한 상태로 반복적인 강간과 구타 등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고문, 상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

김영숙할머니가 증언한 것처럼 질을 넓힌다고 마취도 없이 강제로 찢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무한에 있었던 홍강립할머니의 경우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조선인 '위안부'들 역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윤간으로 인해 성기가 손상되고 성병에 전염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재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전 생애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그들은 또한 고문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욕 등의 폭력을 당했다.

최화선(1927-)의 증인은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1994년 그녀가 밤에 찾아온 일본인 장교를 거절하자, 그는 그의 성기를 입에다 넣으려고 시도하였고, 그녀는 그 성기를 깨물어버렸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는 보초에게 그녀를 때리라고 시켰다. 보초는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 곤봉으로 구타하였다. 이틀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 있다가 그녀는 창고에서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오른 손이 부러졌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김복동과 다른 '위안부' 여성'들은 싱가포르의 10사단 병원으로 실려왔다. 일본군들은 연합군측이 도착하기 전에 범죄적인 위안소 체계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들에게 간호 훈련을 시켰다. 이 여성들은 자주 수혈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 -노예화

조선인 '위안부'들은 계속되는 강간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기 결정권도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조건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들은 군인들이 감시하에 사실상

의 감금 체제 하에 있었다. 운신의 자유는 거의 없었다. 휴일날 외출을 할 때에도 감독하는 군인이 여성들에 동행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공개적인 참수를 수반하는 지독한 처벌이 내려졌다. 비록 이러한 용도를 위한 군표가 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매우 자주, 아프거나 생리중이거나 임신한 '위안부'들도 일본군을 받도록 강요 당했다. 규정상으로는 군대에서 나누어주는 피임기구('삿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여성들은 또한 요리, 세탁, 간호와 같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위안부'의 상태가 이미 일종의 노예제였지만, 이동 군위안소에 소속된 군위안부 여성들(특히 한국인 군위안부 여성들)은 언제나 전선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그 결과, 민간인 여성들은 노예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군대의 의도에 달려있게 되었다.

일본군 최고위 장교는 위안부 체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안부'와 군인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 중 한 예는 오키나와의 제24사단 제3475부대의 1944년 12월 20일의 위안소 규정이다. 제24사단장은 육군중장 아마미야 쿠수미( )였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들은 "공동 소유의 개념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점유의 개념(또는 개인적인 소유)의 개념은 금해야"하며, "위안부 여성들은, 고객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공평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봉사할 것으로 명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여 몸을 망가뜨리거나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얼마나 일본군 차원에서 군위안부를 노예화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는가를 잘 알게 합니다.

김복동, 문필기, 강순애, 돌아가신 문옥주 할머니 등은 일본군 간호부로의 일도 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신도 할머니는 이동위안소를 따라 성노예로 있으면서 일본군 보초를 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었던 이들이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성노예로, 노동노예로도 언제든지 역할이 바뀌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군의 노예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고 문옥주는 1944년에 만달레이 사단 사령부가 아가트로 옮겨갈 때 군대를 따라 강제로 이동하였다. 55사단의 사령관은 그 당시 하나야 타다시(1943년 10월부터 1945년 7월까지)였다. 그리고 다시 프로무(Prome)로, 랑군의 '랑군 가이칸' 위안소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세월 후에 그녀가 속해 있던 그룹은 기차로 태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군용 트럭으로 Ayutthaya로 옮겨져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상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

(송신도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국의 '세카이칸'이라는 해군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빨래, 청소 등 강제 노역을 했다. 아이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카쿠슈에 있는 또 다른 위안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안니, 조안, 호킹 등 다양한 지역의 위안소로 끌려 다녔다. 이 위안소들은 각 진장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다.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 그녀는 내쫓기는 것이 두려워서 한민은 민간요법으로 유산을 하기도 하였다. 그 곳에서 일본 군인들은 그녀와 다른 '위안부'들에게 중국인 포로의 대량학살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하였다. 일본 군인들은 구덩이를 파놓고 중국인 포로들을 칼로 학살하였다. 학살이 끝나고 일본 군인들은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서 '위안부'들은 군인들에게 술을 따라야만 했다. '위안부'들은 종종 보초를 서기도 했으나, 여기에는 어떤 '임금'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부'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틈틈이 돈을 받아 '수입'을 올렸다.?)

살인 희생자들의 증인에 따르면 여러 경우의 살인이 있었다. 위안부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폭행이 가장 극단적으로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살인은 때때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위안부들이 전방이나 전방으로 가는 일본 군대를 따라 강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후퇴를 하는 동안에도 일본군들은 위안부들을 성노예로 부렸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소모품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매독과 같은 성병에 감염되어 많은 위안부들이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결핵과 말라리아로 죽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강간과 노예적 상황으로 인해, 위안소에서 많은 위안부들이 자살을 하였다. 김복동과 김군자는 각각 광동과 훈춘의 위안소에서 도망도 할수 없고 너무나 비참해서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 두 할머니 비디오 증언

위안부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인공유산술을 해야만 했다. 황금주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606호를 맞았을 때, 그녀는 몸이 붓고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고 하혈했다. 그때 그들은 그녀를 군 병원으로 데리갔고 군의관이 자궁 안을 긁어냈다. 이런 식으로 서너번 긁어낸 후 임신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아살해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또 다른 비인간적인 대우로서 약물과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긴 시간동안 규칙적으로, 일본 군대는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성병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606호로 알려진 약물을 주사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상선, 종종 강제적인 불임을 야기하면서 생식 기능의 상실 혹은 죽음을 가져왔다. ---확인요.

전체 위안부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위안소에 있었던 그들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 지배 하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한국인 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본 정책과의 연관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 행위는, 예를 들면 위안소에서 그들이 받는 돈에서의 차등과 같이 만연했다. 전방에 보내진 대부분의 위안부는 한국인이었는데 기기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민족차별적 행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은 생식 기관의 파손, 임신 방해, 낙태 등 위안소 안에서 행해진 다양한 범죄 행위들은 위안부가 일본 병사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군수 물자나 마찰가치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고립적인 사건들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위안소 정책의 귀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야만적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알려진 처벌 사례는 없다.

-일본군은 위안소에 갈 수 있는 요인, 시간, 요금 등 위안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군의 필요에 의해 위안소나 위안소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러한 규정은 민간 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위안소라도 역시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군위안부는 군의 일부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성병 검진도 군병원에서 하였고 군위안부가 군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안소 규정에 대한 사진과 자료화면- 복수로 제시

한씨 할머니의 병원사망기록 오키나와

-1944년 하상숙이 있었던 지역도 역시 오카무라 야스지의 지휘아래 있던 중국파견군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중지나 제 11군 사령관인 오카무라 야스지는 1938년 10월 27일에 그의 상관인 중지나 파견군 사령관인 하타 순로쿠와 제 11군 참모관들과 결탁하여, 한구의 제 11군 부대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카무라 자료화면

김복동은 광둥에서부터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안소로 끌려다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둥 지역은 안도 리키치 사령관이 지휘하는 제21군대가 군위안소를 만들었고 사령관이 내무성과 대만총독부에 '위안부'의 차출을 요구하였던 곳입니다. 1939년 4월에 제21군대의 총사령관은 위안소를 설립하였고, 그 군대가 관리하는 '위안부'의 수가 850명이라고 보고하였다.

(안도 리키치 관련 문헌 파워포인트)

21군이 동원한 것은 민족??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21군에만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일본군 각군 사령관들이 군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 동원, 그리고 위안소에 동원된 조선여성에게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타; 지속적인 감금, 지속적인 체계적인 노예화, 학살, 위안소 내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상황과 그 지속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 명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제국군의 병영내 혹은 그 근접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다. 위안소는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와 다른 고위 장교, 하위 장교, 병사들에 의해 운영된 군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하에 있었다.

히로히토, 도조 히데키,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오카무라 야스지, 마츠야마 유조는 적어도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천황, 수상, 육군대신, 조선총독, 군사령관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서로 협조하여, 위안소 체계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용인하거나 방치하였으며, 위안소를 비롯한 여타의 성직 노예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반복적인 강간과 노예화, 지속적인 육체적 심리적 폭행,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 등의 성격을 띠는 위안부의 생활 조건을 화립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는 \*\*에 \*\*\*는 \*\*\*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범죄

강간 및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처우, 고문과 고통, 상해, 인간의 존엄성 유린을 일으키는 고의적 행위/노예화, 불법적인 감금, 비인도적인 처우, 의도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킴, 민간인 공격, 과도하게 고의적인 죽음, 상해, 손해, 민간인 공격, 의도적 학살, 살인, 비인간적이

고 잔인한 처우, 강요된 불임

인도에 반한 범죄

강간 및 비인도적인 처우, 고문, 노예화, 학대, 살해, 비인도적 처우

나 :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이 개시되지만, 특히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점령지 각지에 군위안소가 설치되어 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인한 전선의 확대는 동시에 군위안소라는 비극의 증가를 의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군위안부로 강제연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제연행이라 함은 두 가지의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군위안부가 되었든, 위안부가 된다는 사실을 사진에 알게 된 경우가 진무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위안소로 보내져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기까지 식민지 권력, 군을 비롯한 일본국가의 강제력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군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조선인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행되었으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 갈 수 없는 노예적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강제연행의 본질입니다.

강제연행을 매우 협소하게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가 전시상황으로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적 자원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극히 기초적인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는, 허위에 가득 찬 기만적 연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제연행에 관해 피해자 몇 분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디오 자료

나 : 이상과 같이 군위안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언이 확보된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과연 어떻게 강제연행 되었는가를 통계를 빌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행 시기를 보면, 대부분 중일전쟁 이후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행시의 나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10대의 소녀이며, 심지어 그 중에는 11세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위안부 피해자의 출신지역을 보면 비교적 조선의 남부 지방이 많습디만,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위안부의 고난은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연행의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저희들은 강제동원의 방법을 편의상 사기, 납치, 인신매매의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대부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여, 끌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치에는 보다 직접적인 폭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일종의 채무노예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증언을 정리해 본 결과, 강제연행의 방법으로는 사기와 납치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기와 납치는 사진적 내지 법률적 차원에서는 그 의미가 확실히 구분되지만, 군위안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942년 경에 연행된 김은례 할머니의 증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 이렇게 두 명이 찾아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를 "일본에 있는 방직공장에 보내야 한다"고 통고했다는 거야. "거기 가서 3년만 일하면 돈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머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옥실이(김은례)를 이디 내

보내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게 하라" 고 하고 갔다고 하대. 만일에 "도망가고 있으면 우리 식구 모두를 총살시킬 줄 알아"면서 무섭게 협박까지 하고 갔대요. 그러니 어떡해?"... 나도 이국 땅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내가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데

이 김은례 할머니의 사례는 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민통치와 전시체제라는 이중의 가혹한 지배에 시달리던 조선의 평범한 민간인들에게, 경찰관은 기억할 수 없는 절대로 복종해야 할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군위안부 강제연행에서 거의 만수를 집하는 사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권 통치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제도적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기 증인을 하러 나오신 박영심 할머니는, 1938년 3월 당시 16살의 나이에 평양에서, 공장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접근한 일본 경찰관에 의해, 난징의 위안소로 보내졌습니다. 또 하상숙 할머니는 1944년에 두 명의 조선인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일본군을 위해 위문단에서 일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 병원의 간호사 일을 하러 간다는 명목도 사기의 방법 중 하나로 종종 등장합니다.

납치의 경우는 식민지 말단 권력인 경찰 혹은 군인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심달연은 연행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그 때 나는 열 두 살인가 열 세 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강제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언니하고 둘이서 나물을 캐러 나갔습니다. 한참 나물을 뜯고 있는데, 어떤 차가 다가오더니, 모자를 쓰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두어 명 내려왔습니다. 우리 쪽에 와서는 광주리를 발로 차버리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자매는 무서워 그냥 끌어안고만 있었습니다. 그 때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자 그 남자들은 나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언니의 머리채를 쥐어서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내가 "언니야" 하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 쫓아와서 나도 차에 태워 버렸습니다.

심달연 할머니가 차에 타고 보니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전부 차에 실어서 태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우니까, 구둣발로 그냥 차버렸습니다. 구둣발에 한 번 차이면 정말 아팠습니다. 이렇게 심달연의 연행 과정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군위안부로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연행자나 일본 군인은 여성을 고문하거나 강간, 집단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강덕경 할머니는 15살 되던 해에 일본 토야마현의 후지코시 비행기 공장에 여자근로정신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망쳤으나, 곧 일본 군인에 의해 붙잡혀서, 강제로 트럭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 할머니 증언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한 방법은 명백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조선에까지 적용되던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군위안부의 연행 과정은 '노예 사냥'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이 과연 군부, 경찰, 행정 당국의 관여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고통의 나날을 겪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하는 일에 경찰, 헌병, 관리와 같은 식민지배 말단기관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지만, 그것으로 강제연행의 전모가 밝혀지는 않습니다. 식민지 통치기관과 일본국의 관련부서가 총체적으로 기획, 집행하였기 때문에 군위안소의 강제연행은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941년 일본군이 대 소련 침공의 일환으로 발인 관동군 특종(特種) 연습에서 확인됩니다. 80만 명의 병력 동원을 계획한 관동군 사령부는 '위안'을 제공할 2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해 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동군 참모였던 하라 겐시로가 조선에 건너가서 조선총독부에 위안부의 조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8천명의 조선 여성을 북중국에 보냈습니다.

대규모로 발주된 군위안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전역과 민중들에게 절대자로 군림하던 조선총독부의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결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경무국이 실질적인 지휘자였으며, 지역에서는 경찰서를 포함한 일반 행정라인이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시스템을 증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행된 군위안부의 눈에 비친 경찰, 헌병, 먼 서기 등은 분명히 국가의 공적 업무의 집행자였습니다. 이 점은 연행된 조선 여성의 강제 이송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제 이송은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되었습니다. 1937년 8월 31일의 외무차관의 통첩을 게기로, '위안부'를 포함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이 도항자의 신분, 직업, 도항목적, 요건, 기한 등을 조사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출발항 관할 경찰서장은 신분증명서 또는 정식여권 소지자에 한해 승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가 발행한 어권이나 증명서, 즉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같은 해 9월 3일과 17일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에서 각 도지사에게 위의 내용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방침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것은 광둥 및 한구 방면으로의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입증됩니다. 1938년 12월에서 3월에 걸쳐 각 도의 경찰부장에게 내려진 3건의 통첩이 그것입니다. 특히 3월 10일자 통첩은 한구 쪽의 "군위안소가 포화상태"이므로 도항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월 20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조선총독부 외무부장에게 보낸 문서를 받아, 3월 3일 조선총독부 외무부장이 경무국장에게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각도 경찰부장에게 하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식민지 당국자는 중국 현지의 영사관→외무성 본성→척무성 조선부→조선총독부 외무부(경무국)→각 경찰관서의 경로를 통해 '위안부' 도항을 통제·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은 식민 당국을 포함한 일본 행정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에는 조선군 사령부와 그 에하의 헌병대가 또 다른 루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마에서 인함군의 포로가 된 한 위안소 업자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1942년 조선군 사령부의 제안을 받아 위안부 조달을 허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업자는 22명의 조선 여성을 300원에서 1000원의 진도금으로 매수했고, 여성들의 나이는 모집 당시 17세에서 29세였습니다. 조선군 사령부는 그에게 모든 일본군 부대가 수송, 식량 지급, 의료 등의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한을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본군, 조선총독부, 일본국의 관련 부서는 조선 여성의 강제연행과 이송에 긴밀하게 관여하였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이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